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78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박 중인 선박 등에 화재 발생 시 해양경찰의 초동대응 근거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 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박 중인 선박 등에 화재 발생 시 해양경찰의 초동대응 근거마련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소방활동 전에 화재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관서에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정박 중인 선박 등에 대한 화재발생시의 조치) ① 해양경찰관은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소방대의 소방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재에 대한 대응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소방 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소방청이 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¹⁾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인명구조, 응급처치,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수행하는 긴급구조기관으로, 육상에서는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지정되어 있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가 지정되어 있음.²⁾

특히, 「재난안전법」은 해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긴급구조에 대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에 따라 해수면에서의 선박등의 화재 등 조난사고 시 수난구호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각각 두는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수행하고 있음.⁴⁾⁵⁾

그런데, 현행 법체계 상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소방기본법」에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 발생한 화재를 소방청의 소관으로 한정함에 따라⁶⁾ 양 기관 간 책임 분담에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통보와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박은 해상에서 과도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선박에 설치된 전기·기계 장비의 내구성이 약화되기 쉽고, 전선 연결부위가 느슨해지면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며, 항구에 밀집 정박된 선박은 선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어렵고 강한 해풍이 화재를 급속히 확산시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⁷⁾

[최근 5년간 선박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정박 선박화재	91	140	130	85	81	527
운항 선박화재	42	52	42	69	57	262
전체 선박화재	133	192	172	154	138	789

* 자료: 해양경찰청

6)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대표적인 사례로 2021.03.23. 새벽 충남 태안의 신진항에 정박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선박 등 17척이 소실되었음.(“태안 신진항에 불...선박 17척 불에 타”, KBS, 2021.03.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5814&ref=A>)

특히, 해안가에 인접한 해양경찰관서는 항구에 정박된 선박 화재에 대한 선제적인 초동대응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초동대응과 이후 소방당국과의 협력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양경찰이 초동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경찰이 초기 화재 진압을 주도하는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 재난대응체계로 일반적인 재난 신고, 소관기관 통보, 초동대응 및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규정은 「재난관리법」에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수상에서의 선박등의 화재, 침몰 등 조난사고에 따른 수난구조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⁸⁾

화재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화재현장 발견자의

8) 「수상구조법」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조난사고(화재 포함)를 신고 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화재 사실의 통지와 소방대 출동 전 관계인의 사전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⁹⁾

개정안에 따른 정박 중인 선박등의 화재에 대한 해양경찰의 예외적인 초동대응 절차는 현행 재난안전 관련 규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재난대응체계 상 재난 신고 등 근거규정]

구분	「재난안전법」	「수상구조법」	「소방기본법」
재난 신고	§19(재난 신고 등)①	§15(조난사실의 신고 등)①	§19(화재 등의 통지)①
소관기관 통보	§19(재난 신고 등)②	§15(조난사실의 신고 등)③	§20(관계인의 소방활동 등)②
초동대응 및 긴급구조	§37(응급조치) §47(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51(긴급구조)	§13(수난구조의 관할) §16(구조본부 등의 조치)①	§16(소방활동) §20(관계인의 소방활동 등)①
관계기관 간 협조	§49(중앙긴급구조통제단)③ §50(지역긴급구조통제단)③ §51(긴급구조)②	§14(수난구조협력기관과 의 협조 등) §16(구조본부 등의 조치)③	

둘째, 현행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⁰⁾ 선박등의 화재와 관련한 수난구조에 대한 예외적

9)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사항을 「해양경비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체계상 정합성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해양경비법」 과 「소방기본법」 비교]

구 분	해양경비법	소방기본법
목 적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이바지
임 무	해양범죄 예방, 해양수산자원 보호,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해양시설 보호 등	화재 예방·경계 및 진압, 구조·구급 활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은 정박 중인 선박의 화재에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박선박의 화재 대응에 있어 부처 간 업무협조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취지로 ‘소방 관련 관계기관의 초동대응 및 통지

10)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관련 사항을 신설'하려는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¹¹⁾의 개정만으로 개정 취지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아울러, 소방청에서도 「해양경비법」 제14조¹²⁾에서 해양경찰청이 경비수역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를 통해 기관 간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화재 신고 이관 및 공동 대응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 체계와 제도를 통해 정박 중인 선박의 화재 대응 및 기관 간 협조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25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03, 정점식의원등11인): 소방당국이 아닌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화재진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12) 「해양경비법」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